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특허법인 무한

대한민국 06144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60, 8층 (역삼동, 진영빌딩)

발송일 (일/월/년) 2018년 11월 14일 (14.11.2018)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FPE-17-0512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8/006903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8년 06월 19일 (19.06.2018)

우선일 (일/월/년)
2017년 09월 08일 (08.09.2017)

국제특허분류(IPC)
G06F 21/31(2013.01)i, G06F 3/041(2006.01)i, G06F 3/16(2006.01)i, H04L 9/08(2006.01)i, H04B 11/00(2006.01)i, G06Q 50/10(2012.01)i, H04W 4/80(2018.01)i, H04W 12/06(2009.01)i, G06Q 30/02(2012.01)i

출원인
주식회사 킨터치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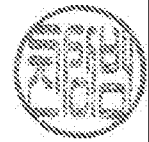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18년 11월 14일 (14.11.2018)

심사관
진상범
전화번호 +82-42-481-8398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a)).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1. 추가수수료납부요구서(서식 PCT/ISA/206)에 대응하여 출원인은 규정된 기간내에
 -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 이의신청과 함께 추가수수료 및 이의신청료(해당하는 경우)를 납부하였습니다.
 - 이의신청과 함께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이의신청료가 납부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본 기관은 발명의 단일성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추가수수료 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3. 당해 기관은 PCT 규칙 13.1, 13.2, 13.3에 따라 발명의 단일성 요건이
 - 충족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충족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제1군 발명: 청구항 제1항-제10항은 사용자 단말에 터치 입력 및 사운드 신호 입력을 가하는 사운드 스탬프 및 이를 사용하는 정보 처리 장치에 관한 것입니다.

제2군 발명: 청구항 제11항-제17항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콘 ID에 응답하여 정보를 추출하는 정보 처리 장치에 관한 것입니다.

사용자 단말에 터치 입력 및 사운드 신호 입력을 가하는 사운드 스탬프 및 이를 사용하는 정보 처리 장치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콘 ID에 응답하여 정보를 추출하는 정보 처리 장치는 서로 다른 기술분야의 발명으로서 PCT 규칙 13.2에서 규정된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1군 발명과 제2군 발명 사이에는 단일성이 없습니다.

4. 따라서 본 견해서는 국제출원의 다음 부분에 대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모든 부분
- 청구항 _____ 에 관련된 부분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1-17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없음	있음
	청구항	1-17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17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 D1: KR 10-2015-0092688 A (모비두 주식회사) 2015.08.13
- D2: JP 2014-109985 A (FUJISAWA KAZUNORI) 2014.06.12
- D3: KR 10-2016-0015512 A (에스케이플래닛 주식회사) 2016.02.15
- D4: KR 10-2016-0029896 A (주식회사 커넥티드에잇) 2016.03.16
- D5: KR 10-2016-0097039 A (안기순) 2016.08.17
- D6: KR 10-2017-0100822 A (주식회사 참좋은넷) 2017.09.05

2.1 신규성 및 진보성(PCT 제33조(2) 및 (3))

2.1.1 독립항: 청구항 제1항

청구항 제1항은 사운드 스탬프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발명과 가장 근접한 인용문헌 D1에는 ‘전송 음파를 출력하는 출력부(D1: 청구항 1 참조); 및 하나 이상의 전도성 락을 포함하고, 사용자 단말의 터치 인터페이스에 접촉하여 적어도 하나의 터치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접촉부(D1: 청구항 1 참조)를 포함하는 전자 스탬프(D1: 청구항 1 참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구항 제1항은 ‘보안 사운드 신호와 터치 신호를 생성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인용문헌 D1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차이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유니크하게 부여된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기준 음파를 변조하여 전송 음파로 변환하는 제어부(D1: 청구항 1 참조); 및 복수개의 터치 이벤트의 패턴을 발생시키는 접촉부(D1: 단락 [0046] 참조)’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1에 의해 자명하므로, PCT 제33조(2)에 따른 신규성은 있으나,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은 없습니다.

추가 기재란에 계속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청구범위, 발명의설명 및 도면의 명료성에 관하여 또는 청구범위가 발명의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청구항 제16항은 청구항 제15항의 ‘제3 정보’ 를 인용하고 있으나, 상기 ‘제3 정보’ 는 앞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6항은 PCT 제6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참조: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는 청구항 제16항의 ‘상기 제3 정보’ 를 ‘상기 제4 정보’ 로 가정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2.1.2 종속항: 청구항 제2항-제4항

청구항 제1항의 종속항인 **청구항 제2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제어부가 유니크하게 부여된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기준 음파를 변조하여 전송 음파로 변환하는 점(D1: 청구항 1 참조); 및 기준 음파의 주파수는 비가청 주파수 대역인 점(D1: 단락 [0056]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2항의 종속항인 **청구항 제3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하나 이상의 전도성 팁을 포함하고, 사용자 단말의 터치 인터페이스에 접촉하여 적어도 하나의 터치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접촉부(D1: 청구항 1 참조)'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3항의 종속항인 **청구항 제4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전송 음파를 출력하는 출력부(D1: 청구항 1 참조)'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2항-제4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1에 의해 자명하므로, PCT 제33조(2)에 따른 신규성은 있으나,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은 없습니다.

2.1.3 종속항: 청구항 제5항-제6항

청구항 제4항의 종속항인 **청구항 제5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미리 정해진 시간마다 생성되는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기준 음파를 변조하여 전송 음파로 변환하고 출력하는 점(D1: 청구항 1-2 참조); 및 접촉부가 미리 정의된 패턴에 따라 터치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점(D1: 단락 [0046]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항 제5항의 '서버로부터 일회용 패스워드(OTP)를 수신하는 통신부'는 인용문헌 D1과 차이가 있으나, 상기 차이는 인용문헌 D2에 기재된 '사용자 단말이 인증 서버로부터 생성된 일회용 비밀 암호를 수신하는 점(D2: 단락 [0010]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5항의 종속항인 **청구항 제6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미리 정해진 시간마다 생성되는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기준 음파를 변조하여 전송 음파로 변환하고 출력하는 점(D1: 청구항 1-2 참조)'과 인용문헌 D2에 기재된 '사용자 단말이 인증 서버로부터 생성된 일회용 비밀 암호를 수신하는 점(D2: 단락 [0010]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5항-제6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1 및 D2에 의해 자명하므로, PCT

다음 페이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재란의 연속

제33조(2)에 따른 신규성은 있으나,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은 없습니다.

2.1.4 독립항: 청구항 제7항

청구항 제7항은 정보 처리 장치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항 제7항에 기재된 발명과 가장 근접한 인용문헌 D1에는 ‘CRC 비트를 이용하여 추출한 식별 정보가 전자 스탬프로부터 수신한 식별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단말(D1: 단락 [0051] 참조); 하나 이상의 전도성 팁을 포함하고, 사용자 단말의 터치 인터페이스에 접촉하여 적어도 하나의 터치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접촉부(D1: 청구항 1 참조); 및 유니크하게 부여된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기준 음파를 변조하여 전송 음파로 변환하는 제어부(D1: 청구항 1 참조)를 포함하는 시스템(D1: 단락 [0088] 참조)’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구항 제7항은 ‘복수의 사운드 스탬프에 대응하는 정보와 복수의 단말에 대응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제1 사운드 스탬프의 ID(Identification)를 수신하는 것에 응답하여 제1 사운드 스탬프의 ID를 수신하는 송수신부(이하, ‘차이점 1’이라고 함); 및 저장부로부터 제1 사운드 스탬프에 대응하는 제1 정보 및 제1 단말에 대응하는 제2 정보를 추출하는 처리부(이하, ‘차이점 2’라고 함)’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인용문헌 D1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차이점 1’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문헌 D1과 동일 기술 분야인 인용문헌 D3에 기재된 ‘비콘 디바이스(400)가 매장 내에 복수 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자 단말기(300)가 복수개의 비콘 디바이스(400)에서 출력하는 비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점(D3: 단락 [0053]; 및 도면 5 참조); 및 스탬프 서비스 서버(100)가 사용자 단말기(300)로부터 사용자 정보 및 비콘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 미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사용자 정보에 대응하는 스탬프 정보를 추출하고, 비콘 정보에 대응하는 POS 단말기(200)에 스탬프 정보를 사용자 정보와 함께 전송하는 점(D3: 단락 [0037]; 및 도면 5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설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차이점 2’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문헌 D1과 동일 기술 분야인 인용문헌 D2에 기재된 ‘서버가 인증 결과를 클라이언트 측 휴대 단말 및 점포측 휴대 단말에 송신하는 점(D2: 청구항 1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항 제7항의 상기 ‘차이점 1’ 및 ‘차이점 2’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문헌 D2 내지 인용문헌 D3의 상기 특징을 인용문헌 D1에 채용하여 용이하게 도출 가능한 것으로, 결합에 기술적 곤란함이 없고 예상치 못한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7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1 내지 D3에 의해 자명하므로, PCT 제33조(2)에 따른 신규성은 있으나,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은 없습니다.

2.1.5 종속항: 청구항 제8항-제10항

다음 페이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재란의 연속

청구항 제7항의 종속항인 **청구항 제8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문헌 D2에 기재된 '서버가 인증 결과를 클라이언트 측 휴대 단말 및 점포측 휴대 단말에 송신하는 점(D2: 청구항 1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8항의 종속항인 **청구항 제9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문헌 D1에 기재된 '제어부가 유니크하게 부여된 식별 정보를 이용하여 기준 음파를 변조하여 전송 음파로 변환하는 점(D1: 청구항 1 참조); 및 기준 음파의 주파수는 비가청 주파수 대역인 점(D1: 단락 [0056]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9항의 종속항인 **청구항 제10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문헌 D2에 기재된 '사용자 단말이 인증 서버로부터 생성된 일회용 비밀 암호를 수신하는 점(D2: 단락 [0010]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8항-제10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1 내지 D3에 의해 자명하므로, PCT 제33조(2)에 따른 신규성은 있으나,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은 없습니다.

2.1.6 독립항: 청구항 제11항

청구항 제11항은 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항 제11항에 기재된 발명과 가장 근접한 인용문헌 D4에는 '단말이 비콘 디바이스의 커버리지 내에 진입하여 비콘 신호를 인식하고 비콘 정보 및 단말 정보를 전송하면, 수신한 단말 정보를 통해 미리 저장된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는 광고 서버(D4: 단락 [0021]; 및 청구항 4 참조)를 포함하는 광고 제공 서비스 시스템(D4: 청구항 1 참조)'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구항 제11항은 '사용자 프로필에 대응하는 제3 정보를 추출하는 처리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인용문헌 D4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차이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문헌 D4에 기재된 '광고 추천부(120)가 단말(200)로부터 수신한 비콘 정보 및 단말(200) 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부(150)의 광고 DB에 저장된 광고 정보 중 단말(200)에 제공할 수 있는 적합한 광고 정보를 추출하는 점(D4: 단락 [0051]; 및 도면 1-2 참조); 및 광고 추천부(120)는 단말(200) 사용자가 속하는 그룹, 즉 동일한 연령, 직업, 나이대 등의 그룹 및 방문 매장, 소비 패턴 등이 유사한 그룹에서 적합한 광고 정보를 추출하는 점(D4: 단락 [0058]; 및 도면 1-2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1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4에 의해 자명하므로, PCT 제33조(2)에 따른 신규성은 있으나,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재란의 연속

2.1.7 종속항: 청구항 제12항-제14항

청구항 제11항의 종속항인 **청구항 제12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문헌 D4에 기재된 '비콘 디바이스에서 출력하는 비콘 신호를 통해 단말의 위치를 감지하는 점(D4: 단락 [0001] 참조); 및 비콘 신호를 인식하는 단말이 다른 통신에 의존하지 않고도 현재 단말의 위치가 비콘 디바이스 주변에 위치함을 인지하는 점(D4: 단락 [0024]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12항의 종속항인 **청구항 제13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문헌 D4에 기재된 '광고 추천부가 광고 정보의 선택 시 비콘 정보를 전송한 어플리케이션과 매칭되는 광고 정보를 선택할 수 있고, 예를 들어, A 매장에 단말이 위치한 경우, 카드사 어플리케이션에는 A 매장에서 특정 카드 사용 시 얻을 수 있는 할인 정보를, 커피 전문점 어플리케이션에는 A 매장에 인접하여 위치한 커피 전문점의 위치를 제공하도록 선택하는 점(D4: 단락 [0064] 참조); 및 광고 서버는 단말의 사용자 정보를 통해 사용자가 속하는 그룹에 속한 다른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에 관한 광고 정보를 제공하는 점(D4: 단락 [0076]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제13항의 종속항인 **청구항 제14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문헌 D4에 기재된 '광고 추천부가 단말 사용자가 속하는 그룹, 즉 동일한 연령, 직업, 나이대 등의 그룹 및 방문 매장, 소비 패턴 등이 유사한 그룹에서 적합한 광고 정보를 추출하는 점(D4: 단락 [0058]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2항-제14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4에 의해 자명하므로, PCT 제33조(2)에 따른 신규성은 있으나,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은 없습니다.

2.1.8 독립항: 청구항 제15항

청구항 제15항은 정보 처리 장치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항 제15항에 기재된 발명과 가장 근접한 인용문헌 D4에는 '단말이 비콘 디바이스의 커버리지 내에 진입하여 비콘 신호를 인식하며, 사용자가 A 매장, B 매장, C 매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각 매장에 설치되는 비콘 디바이스의 비콘 신호를 순차적으로 인식하는 구성(D4: 단락 [0021], [0061]; 및 도면 5 참조); 및 단말로부터 수신한 비콘 정보 및 단말 정보를 기초로 단말에 제공할 적어도 하나의 광고 정보를 추출하고, 비콘 정보와 해당 비콘 디바이스가 설치된 매장 정보 및 해당 매장 정보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매칭하여 저장하는 구성(D4: 단락 [0075] 참조)을 포함하는 광고 제공 서비스 시스템(D4: 청구항 1 참조)'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재란의 연속

다만, 청구항 제15항은 ‘매칭 정보를 이용하여 제4 정보를 추출하는 처리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인용문헌 D4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차이점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문헌 D4와 동일 기술 분야인 인용문헌 D5에 기재된 ‘해당 비콘과 매칭된 정보(또는 서비스)를 추출하는 점(D5: 청구항 1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항 제15항의 상기 차이점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문헌 D5의 상기 특징을 인용문헌 D4에 채용하여 용이하게 도출 가능한 것으로, 결합에 기술적 곤란함이 없고 예상치 못한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5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4 및 D5에 의해 자명하므로, PCT 제33조(2)에 따른 신규성은 있으나,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은 없습니다.

2.1.9 종속항: 청구항 제16항-제17항

청구항 제15항의 종속항인 **청구항 제16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문헌 D4에 기재된 ‘단말로부터 수신한 비콘 정보 및 단말 정보를 기초로 단말에 제공할 적어도 하나의 광고 정보를 추출하고, 비콘 정보와 해당 비콘 디바이스가 설치된 매장 정보 및 해당 매장 정보에 대응하는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매칭하여 저장하는 점(D4: 단락 [0075] 참조)’과 인용문헌 D5에 기재된 ‘해당 비콘과 매칭된 정보(또는 서비스)를 추출하고, 해당 정보 제공서버로 특정 정보(또는 서비스) 제공서비스를 요청하는 점(D5: 청구항 1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6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4 및 D5에 의해 자명하므로, PCT 제33조(2)에 따른 신규성은 있으나,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은 없습니다.

청구항 제15항의 종속항인 **청구항 제17항**은 처리부가 전시회의 종료 후에 복수의 단말 중 미리 지정되는 수 이상 비콘의 ID를 송신하는 제5 단말을 선별하고, 송수신부는 제5 정보를 제5 단말로 송신하고, 제5 정보는 경품 수상 정보, 진행중 또는 진행 예정인 다른 전시회의 정보 중 적어도 하나인 점에서 인용문헌 D4 및 D5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차이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문헌 D6에 기재된 ‘전시회 알림모듈(150)이 관심정보 수집모듈(110)에서 수집된 관람객의 관심 전시회 정보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부에 관심 전시회 정보에 해당하는 전시회 정보가 저장되는 경우, 관심 전시회에 대한 일정, 장소 등의 정보를 SMS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구성되는 점(D6: 단락 [0031]; 및 도면 2 참조)’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17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4 내지 D6에 의해 자명하므로, PCT 제33조(2)에 따른 신규성은 있으나,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은 없습니다.

2.2 산업상 이용가능성(PCT 제33조(4))

청구항 제1항-제17항에 기재된 발명은 PCT 제33조(4)에 따라 산업상 이용가능합니다.